

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21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전 시민·유관기관단체·출향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관한 재단법인으로 설립(안 제3조)
- 나. 재산의 조성은
 - 1) 사천시의 출연금
 - 2)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 - 3)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·물품 및 기타 재산
 - 4) 기타 수익금으로 함(안 제5조)
- 다.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(안 제7조)
- 라.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,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할 수 있음(안 제16조)

4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, 제40조(사단법인의 정관), 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임원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(과견근무)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임
- 주요내용과 검토 의견으로
 -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
 - 시 출연금과 시민·유관기관 단체·출향인사들이 출연하는 금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
 - 시 관내 대학생과 초·중·고등학생 해외 연수지원사업, 장학금지원, 우수교사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